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360
----------	------

제안연월일 : 2020. 3.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한기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89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결과 송아량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25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병합하여 심의하기로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심의결과 계류중인 의안번호 525와의 병합심의 필요성 발생.

3. 대안의 주요내용

- 두 안을 병합하여 심의하고, 송아량 의원의 안을 일부 수정함.
- 제7조제1항 ‘시설’의 경우, ‘도구, 기계, 장치의 설치’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로 수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를”을
“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
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로 한다.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
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제7조 제1항관련)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6. 그 밖에 구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u>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를</u>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③~④ <생략></p>	<p>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 <u>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u> ----- --.</p> <p>1. <u>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u></p> <p>2. <u>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u></p> <p>③~④ <현행과 같음></p>